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7일, 정혜경 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4.7.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1차 교육위원회(2025.1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혜경 의원)

2023년 교육부의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 검진자 1만 8,54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87명 (1.01%)에 달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음.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은 원인은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흙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무환경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대체인력이 부족하여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해야하는 근무조건으로 최근에는 급식실 종사자가 부족한 현상도 발생하여 학생들에게 정상적 급식을 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질과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뿐 아니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도록 함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급식실 종사자의 건강보장을 위한 책임을 지도록 임무를 부여하며,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1인당 식수인원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학부모 및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5조, 제7조의2·제7조의3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경비를 지원하며, 1인당 식수인원 기준을 수립하는 등 입법 조치를 하려는 것임. 이는 최근 학교급식종사자의 작업환경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임자를 둘러싼 역할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시설·설비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에 타당

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학교급식법」이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학교급식 종사자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1인당 식수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기존의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방식과는 달리 지역별·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정혜경 의원, 문정복 의원, 서지영 의원, 김태호 의원, 고민정 의원, 김문수 의원, 강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